

제2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5.1.28(화) 16:00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 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신선기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 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이의영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1월 19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1월 20일

3. 제안 이유

- 2015년 1월 1일자로 ‘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’ 및 동  
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농업기술원의 부장 직위가 국장으로 변  
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‘연구개발부장’ ⇒ ‘연구개발국장’, ‘기술지원부장’ ⇒  
‘기술지원국장’ 으로 개정(안 제18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’은 관련 조례와 규칙이 개정되어 농업기술원의 부장 직위를  
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